

###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기준(제정)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 승인일	시행일	승인권자	준법감시인
제정	2022.6.27	2022.6.27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대표이사 이승준 (인) 운동팀(과장) 조원호 (인)	엄영섭 (인)

마운틴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승 준

##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기준

제 정 2022.06.27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회사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투자대상 자산)

① 이 기준은 회사내 운용담당자 등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이하 “관련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회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개정절차 없이 관련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른다.

#### 제3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등)

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영,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용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3. “매매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6.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7.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 제5조(기준변경)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

#### 제6조(주관부서)

이 기준과 관련된 업무의 주관부서는 준법감시부서(준법감시인)로 한다.

## 제 2 장 사전자산배분

### 제7조(자산배분 원칙)

- ① 회사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별로 공정하게 안분배분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로 취득·처분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균등한 가격은 다수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주문시간이 다른 동일한 종목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별개 주문으로 본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 후 1개월 내 포트폴리오 구축, 환매대응, 일부체결 시 투자한도 위반발생 여부 등 집합투자기구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담당자는 집합투자기구별 우선순위 지정 사유를 주문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운용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⑤ 공모주, 회사채 등의 수요예측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청약일에 집합투자기구별로 청약수량을 기재한 사전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⑥ 공모주 및 회사채 등의 청약은 그 실행결과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각 집합투자기구규약에서 정한 해당 자산의 최대편입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실행해야 한다.
- ⑦ 회사가 배정받은 공모주 및 회사채는 집합투자기구별로 청약수량에 안분비례하여 배정한다.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사사오입하여 배정하되 잔여수량은 청약수량이 가장 많은 집합투자기구에 배정할 수 있다.
- ⑧ 대량매매(시간외 대량매매에 한 한다)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참여 대상펀드를 선정 하여 운용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배분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⑨ 최종 매매체결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별 주문비율(주식수 비율, 채권액면 비율)에 따라 안분 배분한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별 수량 배분 후 잔여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주문펀드에 잔여수량을 배분할 수 있고, 소량의 배분만이 이루어져 보유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을 증가시키거나 전혀 배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채권자산의 경우 체결규모가 주문수량에 미달할 것을 예상하여 집합투자기구별 상황 및 운용필요에 따라 우선배분 등 안분외 방법을 사전에 배분조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명시한 내용대로 배분할 수 있다.

### 제8조(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

회사는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

### 제9조(자산배분시스템)

-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종목,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집합투자기구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문서의 작성)**

①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③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자산배분의 정정)**

① 운용담당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① 운용담당자는 집합투자기구별로 콜 및 RP 시장의 특성,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 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로 콜, RP 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운용결과를 집합투자기구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 개월 내 집합투자기구, 해지 예정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제13조 (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①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

**제 3 장 운용과 매매의 분리**

**제14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① 회사는 규칙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회사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운용담당자의 업무)**

①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3.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제16조 (매매담당자의 업무)**

①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에 대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준법감시부서 감시)**

준법감시부서(준법감시인)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2022년 6월 27일)**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